



UFC 도핑 방지 프로그램

UFC
반도핑
정책
강화

효력 발생일 2021년 1월

내용

개요: 프로그램 목표 및 정책 적용 1

薯1藪: 도핑의 정의 1

薯2藪: 반도핑 정책 위반 1

제3조: 도핑의 입증 4

제4조: UFC 금지목록과 TUE 5

제5조: 검사 및 조사 7

제6조: 시료 분석β 9

제7조: 결과 관리 10

제8조: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청문회에 대한 권리 14

제9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15

제10조: 개인에 대한 제재 15

제11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20

제12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20

제13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20

제14조: 기밀유지 및 보고 20

제15조: 결정의 적용 및 인정 23

제16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23

제17조: 소멸시효 23

제18조: 교육 24

제19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24

제20조: 반도핑 정책의 개정 및 해석 24

제21조: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 24

제22조: 면책 조항 25

제23조: 경과규정 25

부록 1 용어의 정의 26

프로그램 목표

이 반도핑 정책은 선수의 건강 및 안전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UFC의 폭넓은 노력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반도핑 정책에 대한 UFC의 목표는 모든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진보적인 최고의 반도핑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본 반도핑 정책은 세계도핑방지규약(이하 “규약”)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본 문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과 일관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본 반도핑 정책은 UFC 스포츠가 실시되는 조건을 규율하는 스포츠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책은 성격상 형사 및 민사법과 구별되며 형사 및 민사 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국가의 요건 및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해당 사안의 사실과 법을 검토할 때, 모든 사법 또는 기타 판결기관은 이 반도핑 정책의 고유한 성격과 이것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규약이 공정한 스포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UFC는 본 프로그램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반도핑기구, 다른 반도핑기구 또는 기타 제3자 반도핑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명시적 권리가 UFC에 유보되거나 위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UFC에 대한 언급은 UFC가 위임한 USADA, 다른 반도핑기구 또는 제3자 반도핑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다.

본 정책의 범위 및 적용

이 반도핑 정책은 UFC와 그 임원, 직원 및 독립계약자와 각 UFC 시합 출전자에게 적용된다. 이 정책은 또한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UFC와의 계약, 체육위원회의 면허, UFC 시합에 참가하거나 인가를 받거나 UFC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준비하도록 인가를 받거나 참여하는 경우 그 조건으로 이 반도핑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UFC 및 USADA의 당국에 이 반도핑 정책을 시행하도록 제출하고, 제8조에 명시된 청문회의 관할권에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도록 제출할 수 있는 기타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반도핑 정책은 다음 관계자에게 적용된다.

A. UFC와 계약을 체결(즉,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모든 선수.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UFC와의 계약 종료일 또는 서면으로 경기 은퇴 결정을 UFC에 통지한 날짜 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의문을 피하기 위해, 선수가 동일하거나 새로운 프로모션 계약에 따라 UFC에 복귀하는 경우 본 반도핑 정책은 해당 선수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B. 전문적 또는 스포츠 관련 역량으로 선수와 직접 함께 일하거나 치료 또는 보조하거나, 선수가 UFC 또는 USADA에 선수지원요원으로 보고한 모든 선수지원요원.

본 반도핑 정책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반도핑 정책을 위반하는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는 원래 UFC 또는 USADA의 권리를 갖도록 했던 관계가 종지된 후에도 결과 관리 및 결과 조치(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와 관련하여 이 반도핑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제1조: 도핑의 정의

도핑은 본 반도핑 정책의 제2.1조부터 제2.10조에 규정된 반도핑 정책을 하나 이상 위반한 것으로 정의된다.

제2조: 반도핑 정책 위반

제2조의 목적은 반도핑 정책 위반을 구성하는 상황과 행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도핑규정 위반 발생 시 이러한 규정이 하나 이상 위반되었다는 USADA의 주장에 기초하여 청문회가 개최된다.

본 반도핑 정책의 적용을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반도핑 정책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고 UFC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 및 방법이 무엇인지 알 책임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도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

2.1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2.1.1 각 선수는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개인적인 의무가 있다. 선수는 자신의 시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고의, 인지, 과실, 무과실 또는 부주의나 기타 명백한 기준의 개념을 통합하는 본 반도핑 정책의 다른 명시적 규정을 조건으로) 제 2.1조 규정의 반도핑 정책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다.
- 2.1.2 제2.1조 규정의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입증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한 것으로 충분하다. 선수의 A 시료에서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가 검출되고, 제7조에 규정된 대로 선수에게 통지한 후에 A 또는 B 시료가 분석되지 않는 경우(선수의 B 시료 분석 권리 포기로 인한 경우 포함); 또는 선수의 B 시료가 분석되고 선수의 B 시료 분석 결과 선수의 A 시료에서 발견된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또는 WADA의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ISL)에서 기술한 조건에서, 선수의 A 또는 B 시료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분리된 시료의 확정부에 대한 분석 결과 분리된 시료의 첫 번째 부분이나 분리된 시료의 확정부에 대한 선수 파동 분석에서 발견된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 2.1.3 UFC 금지목록과 제2.1.3.1조 및 제2.1.3.2조 규정에서 허용농도 또는 최소 결정 허용치가 명시된 약물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가 선수의 시료에서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반도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
 - 2.1.3.1 UFC 금지목록에서 최소 결정 허용치가 구체적으로 식별되는 금지약물에 대해서만 A 또는 B 시료가 적용 가능한 최소 결정 허용치 미만인 경우, 이러한 결과는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비정형분석결과로 취급된다.
 - 2.1.3.2 UFC 금지목록에서 최소 결정 허용치가 구체적으로 식별되는 금지약물에 대해서만 선수의 A 및 B 시료가 모두 적용 가능한 최소 결정 허용치 이상인 경우, 선수는 청문회 등에서 선수의 A 및/또는 B 시료가 해당 최소 결정 허용치 미만이었다고 다룰 수 없다. (단, 이 조항은 청문회 등에서 금지약물이 선수의 A 및/또는 B 시료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 선수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 2.1.4 제2.1조의 일반 규칙의 예외로서 국제표준 및 WADA 기술문서 또는 UFC 금지목록은 특정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평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2.1.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수가 USADA의 테스트 전에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UFC 금지목록에 포함된 모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를 사실을 USADA에 신고하는 경우, 선수 시료에서 그러한 신고된 약물 또는 방법이 존재하거나 사용 증거가 밝혀지더라도 해당 선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USADA가 판명하는 경우에는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2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 2.2.1 각 선수는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개인적인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반도핑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인지, 과실, 부주의 및 기타 기준의 개념을 통합하는 본 반도핑 정책의 다른 명시적 규정을 조건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에 대하여 반도핑 정책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다.
- 2.2.2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가 성공 또는 실패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시도된 것만으로 반도핑 정책의 위반 사유로 충분하다.

2.3 시료 채취 제출 회피, 거부 또는 실패

본 반도핑 정책에 따른 통지 후 시료 채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료 채취를 의도적이거나 부주의로 거부 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4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UFC가 개발한 소재지정보 정책에 정의된 대로 12개월 이내에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3회가 되는 경우.

2.5 도핑관리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시도

금지방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도핑관리과정을 방해하는 의도적인 행위. 부정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2.5.1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뇌물을 제공 또는 수락하거나, 시료 수집을 방해하거나, 시료 분석에 영향을 주거나 불가능하게 하거나, UFC나 USADA, TUE 위원회 또는 청문위원회에 제출된 문서를 위조하거나, 증인으로부터 허위 증언을 얻거나, 결과 관리 또는 결과 부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UFC 또는 USADA에 대하여 기타 사기 행위를 하는 행위 및 기타 유사한 의도적 방해 또는 도핑관리에 대한 방해 시도 행위.
- 2.5.2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 1년 동안 UFC 금지목록에서 항상 금지되는 것으로 분류된 클로미펜, 비특정방법 또는 비특정약물의 사용, 사용 시도 또는 소지한 사실을 USADA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과거 사용, 사용 시도 또는 소지는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신고한 경우 본 정책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자진 신고와 관련하여 제5.7.4조에 규정된 통지기간 요건이 선수에게 적용된다. 또한, 선수가 해당 약물이나 방법을 유효한 처방전이나 권고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행위도 선수가 이후에 반도핑 정책을 위반하면 제10.7조의 목적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2.6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

- 2.6.1 선수가 경기기간 중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또는 선수가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경기기간 외에 소지한 경우. 다만, 해당 소지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치료 목적 사용 면제(제TUE)U에 따른 것이거나 기타 수용 가능한 정당성을 선수가 입증한 경우는 제외한다.
- 2.6.2 선수지원요원이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경기기간 외에 선수, 경기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소지한 경우. 다만, 해당 소지가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치료 목적 사용 면제에 따른 것이거나 기타 수용 가능한 정당성을 선수지원요원이 입증한 경우는 제외한다.

2.7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2.8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투여 또는 투여 시도하거나 경기기간 외에 사용이 금지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경기기간 외에 선수에게 투여하거나 투여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2.9 공모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의한 공모 또는 공모 시도

다음과 관련된 협조, 촉진, 보조, 교사, 공모, 은폐 또는 기타 모든 유형의 고의적인 공모: (a) 타인에 의한 반도핑 정책 위반, 반도핑 정책 위반 시도 또는 제10.12.1조 규정 위반, 또는 (b) 본 반도핑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이 한 행위로 본 정책의 적용을 받았다면 반도핑 정책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10 금지된 연루

선수나 전문적 또는 스포츠 관련 역량을 가진 기타 관계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지원요원과의 관계

- 2.10.1 UFC, USADA, 기타 반도핑기구 또는 체육위원회의 권한 하에 있는 경우, 제 10.12.1.2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상태에 있는 자 또는
- 2.10.2 UFC, USADA, 기타 반도핑기구 또는 체육위원회의 권한 하에 있지 않은 경우, 이 반도핑 정책이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었다면 본 반도핑 정책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로 관여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징계, 또는 프로 스포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자. 해당 개인의 부적격 상태는 그러한 범죄, 전문적 또는 징계 결정일로부터 6년간 또는 범죄, 징계 또는 전문적 제재 조치가 부과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유효하다. 또는
- 2.10.3 제2.10.1조 또는 제2.10.2조에 기술된 개인에 대한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자.

제2.10조의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USADA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USADA로부터 선수지원요원의 자격정지 상태 및 금지된 연루 행위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그러한 연루 행위를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USADA는 또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할 주체인 선수지원요원에게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선수지원요원이 15일 이내에 USADA에 연락을 취하여 제2.10.1조와 제2.10.2조에 기술된 기준은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선수지원요원의 부적격 행위가 제20.5조에 규정된 프로그램 시작일 이전에 발생했다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10.1조 또는 제2.10.2조에 기술된 선수지원요원과의 어떠한 연루든 전문적 또는 스포츠 관련 역량과는 무관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있다.

3.2 사실 및 추정의 입증 방법

반도핑 정책 위반에 관한 사실은 자백을 포함하여 여러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입증에 관한 다음의 규칙이 도핑 사건에 적용된다.

- 3.2.1 관련 과학계 내에서 합의 후 WADA가 승인하였고 동료 평가를 거친 분석 방법 또는 결정 한계는 과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전제한다. UFC 금지목록에서 규정한 최소 결정 허용치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2.2 WADA가 인증한 시험실과 WADA에서 승인한 기타 시험실은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 따라 시료 분석과 보관 절차를 수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으로부터 벗어나 비정상분석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입증하여 이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으로부터 벗어나 비정상분석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입증하여 전술한 추정을 반박하는 경우, USADA는 표준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비정상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3.2.3 그 외 다른 관련 국제표준이나 본 반도핑 정책에 명시한 다른 반도핑 정책 또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해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기타 반도핑 정책 위반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비준수 행위의 증거 또는 결과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기타 반도핑 정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핑 정책 위반을 합리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다른 국제표준이나 기타 반도핑 정책 또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입증하는 경우, USADA는 그러한 비준수로 인해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반도핑 정책 위반의 사실적 근거가 형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3.2.4 항소심 대상이 아닌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전문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은 그러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해당 결정은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 3.2.5 반도핑 정책 위반을 다루는 청문회의 청문위원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서면으로 요청을 한 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출석(청문회 위원단의 지시에 따라 직접 출석 또는 전화로)이나 청문위원 또는 USADA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경우 반도핑 정책 위반을 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
- 3.2.6 제3.2.1조 및 제3.2.2조에 규정된 추정 제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제3조: 도핑의 입증

3.1 입증 책임 및 기준

USADA는 반도핑 정책 위반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입증 기준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였는가 여부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입증 기준은 단순한 개인성 측면보다는 높지만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의심하여서도 안 된다.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반도핑 정책 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추정의 반증이나 특정 사실 또는 특정 상황의 확정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 이 입증 기준은 여기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의 우월성이 되어야 한다.

제4조: UFC 금지목록과 TUE

4.1 UFC 금지목록의 통합

본 반도핑 정책은 UFC 금지목록을 통합한다. UFC 금지목록 및/또는 개정본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금지목록 및 개정본은 UFC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UFC(또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WADA)에서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발표된다. 모든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UFC 금지목록 및 개정본에 대하여 향후 별도의 형식적 절차 없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구속을 받는다. UFC 금지목록과 모든 개정본의 최신 버전을 숙지할 책임은 모든 선수와 기타 관계자에게 있다.

4.2 UFC 금지목록에 규정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4.2.1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UFC 금지목록(해당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WADA 금지목록 통합)에서는 향후 시합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도핑 테스트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경기기간 중이든 경기기간 외든 불분하고) 도핑으로 금지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그러한 약물과 방법을 식별한다.

4.2.2 특정약물 및 특정방법

제10조의 적용을 위해 UFC 금지목록(해당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WADA 금지목록 통합)에서는 금지약물이 특정약물인지 또는 비특정약물인지 식별하고 금지방법이 특정방법인지 또는 비특정방법인지 식별한다. UFC 금지목록에서 명시적으로 식별하지 않는 경우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식별은 WADA 금지목록 또는 규약에서의 특정 또는 비특정 약물/방법으로서 적용된다.

4.3 UFC의 금지목록 결정

UFC 또는 WADA가 UFC 금지목록에 포함시킬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결정하고 약물을 UFC 금지목록의 범주별로 분류할 때, 그리고 항상 금지되거나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을 분류할 때, 이는 최종적인 것으로서 해당 약물 또는 방법이 은폐제가 아니며 경기력 향상, 건강 위험성, 스포츠 정신 위배 등의 잠재적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4 치료 목적 사용 면제("TUE")UE

4.4.1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사용 시도, 소지, 투여 또는 투여 시도가 있는 경우, USADA가 부여한 TUE의 규정에 부합하면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4.2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선수는 UFC가 개발한 TUE 정책에 따라 USADA 또는 그 피지명인에게 TUE를 신청해야 한다.

4.4.3 본 반도핑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UFC 또는 USADA의 권한 하에 있고 체육위원회나 기타 반도핑기구에 TUE를 신청하는 모든 선수는 TUE 사본과 TUE 증빙으로 제출한 모든 문서를 USADA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USADA는 또한 선수에게 추가 문서와 평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USADA는 TUE를 증빙하는 TUE 문서와 USADA의 추가 요청 문서를 USADA가 수령하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TUE에 대한 허용 또는 거부 결정을 선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4.4.4 TUE 신청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a) 선수가 시합에 참가할 예정이 아닌 경우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기 최소 21일 이전, (b) 선수가 향후 90일 이상 지난 후에 시합에 참가할 예정인 경우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기 최소 90일 이전, 또는 (c) 선수가 90일 미만의 사전 통지로 시합에 참가할 예정인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USADA는 늦게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TUE 소급 적용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선수는 해당 지연 제출이 선수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USADA가 판단하면 TUE 신청서 처리 비용 전액이 부과될 수 있다.

4.4.5 TUE의 만료, 취소, 철회 또는 파기

4.4.5.1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승인된 TUE는 (a) 승인된 기간이 종료하면 추가 통지 또는 기타 형식적 절차 없이 자동으로 만료된다. (b) 선수가 TUE 승인 시에 TUE 위원회가 부과한 요건이나 조건을 즉시 준수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또는 (c) 추후에 TUE의 승인 기준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TUE 위원회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4.4.5.2 이러한 경우 선수는 TUE의 만료, 취소, 철회 또는 파기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TUE에 따라 문제의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소지 또는 투여한 것으로 인한 결과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제7.2조에 따른 추후의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심사에는 그러한 결과가 해당 날짜 이전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반도핑 정책 위반이 단언되지 않는다.

4.4.6 체육위원회와의 조정

UFC 또는 USADA는 관련 체육위원회와 TUE 신청서 조정을 시도한다. UFC 및 USADA는 UFC TUE를 인정하지 아니면 자체적인 TUE를 승인할지에 대한 체육위원회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UFC 선수는 체육위원회 TUE가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한 체육위원회에서 금지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수가 체육위원회나 기타 반도핑기구로부터 TUE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UFC TUE를 신청해야 한다.

4.4.7 UFC에 의해 거부된 TUE 신청에 대한 항소

TUE 신청을 USADA가 거부하는 경우 본 반도핑 정책 및 UFC 또는 그 피지명인이 채택한 모든 TUE 정책에 규정된 행정적 심사가 완료된 후에 UFC 중재 규칙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제5조: 검사 및 조사

5.1 검사 및 조사 목적

USADA 단독 또는 UFC와 USADA의 공동 검사 및 조사는 도핑방지 목적으로만 수행해야 하며,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과 이 국제표준을 보완 또는 수정하는 UFC의 특정 규약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5.1.1 검사는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존재/사용에 대하여 본 반도핑 정책에 규정된 금지 사항을 준수하는지 (또는 준수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적 증거를 얻기 위해 수행된다. USADA가 실시하는 검사 배분 계획, 검사, 사후 검사 활동 및 모든 관련 활동은 UFC 규약에 의해 달리 수정되지 않는 한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USADA는 검사 및 조사와 본 반도핑 정책에 관한 국제표준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될 검사의 횟수와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UFC 규약에 의해 달리 수정되지 않는 한,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의 규정은 그러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자동으로 적용된다.

5.1.2 조사 수행 시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다.

5.1.2.1 비정상분석결과, 비정형분석결과, 비정형여권분석결과 및 비정상여권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제2.1조 및/또는 제2.2조를 근거로 결정하기 위해 각각 제7.1조,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정보 또는 증거(특히 비정형 증거 포함)를 수집한다. 그리고

5.1.2.2 잠재적인 반도핑 정책 위반 가능성의 기타 징후와 관련하여,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제2.2조~제2.10조를 근거로 판명하기 위해 제7.4조와 제7.5조에 따라 정보 또는 증거(특히 비분석적 증거 포함)를 수집한다.

5.1.3 USADA 및 UFC는 모든 가능한 출처로부터 반도핑 정보를 입수, 평가 및 처리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 잡힌 검사 배분 계획 개발을 알리고, 표적검사를 계획하며 가능한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조사 기반을 확립하고 반도핑 규칙 위반에 대한 증거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5.2 검사 수행 권한

5.2.1 USADA는 본 반도핑 정책("본 정책의 범위 및 적용" 부분)에 명시된 모든 선수에 대하여 경기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 검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5.2.2 USADA는 검사 권한 대상 선수(자격정지 기간 상태에 있는 선수 포함)에게 언제 어디서든 시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3 시합 검사

5.3.1 UFC 시합에서 체육위원회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료 채취는 USADA 또는 그 피지명인이 시작하고 감독해야 한다.

5.4 검사 배분 계획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USADA는 검사 유형, 채취 시료 유형, 시료 분석 유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지능적이며 균형 잡힌 검사 배분 계획을 개발하여 실행해야 한다.

5.5 검사 조정

USADA는 동일한 선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체육위원회 또는 기타 반도핑기구와 검사를 조정할 수 있다.

5.6 선수 소재지정보

선수는 UFC가 개발한 소재지정보 정책에 따라 USADA에 소재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7 신규 UFC 선수 및 UFC 경기에 복귀하는 이전 UFC 선수에 대한 통지 요건

5.7.1 이전에 UFC 경기에 참가한 적이 없는 선수는 UFC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첫 UFC 시합이 있기 전 최소 1개월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UFC 시합에 출전할 수 없다. 아래의 제5.7.6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기 규칙은 신규 UFC 선수가 UFC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열리는 시합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5.7.2 UFC의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 중단 때문에 UFC와의 계약 관계를 중지한 선수는 UFC와 새로운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복귀전이 있기 전 1개월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UFC 시합에서 경기를 재개할 수 없다. 아래의 제5.7.6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기 규칙은 복귀 UFC 선수가 UFC와 새로운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열리는 시합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5.7.3 UFC에 은퇴 통지를 하거나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 중단 때문에 UFC와의 계약 관계를 중지한 선수는 경기 참가 재개 의사를 서면으로 UFC에 통지하고 복귀전이 있기 전 6개월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UFC 시합에서 경기를 재개할 수 없다. UFC는 예외적인 상황 또는 엄격한 규칙 적용이 선수에게 명백하게 불공평한 경우 6개월의 서면 통지 규칙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5.7.4 선수가 반도핑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안 UFC 금지목록에서 항상 금지된 클로미펜, 비정형 방법 또는 비정형 약물의 사용, 사용 시도 또는 소지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러한 사실이 확정되고 입증 가능한 기록이 있는 신규 또는 복귀 선수는 경기 전 최소 6개월 또는 선수의 가장 최근 사용 후 1년의 기간(둘 중 짧은 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UFC 시합에 출전할 수 없다. USADA의 재량에 따라, 해당 선수는 경기를 치르기 전에 최소 6개월의 통지기간 동안 최소 2개의 음성 시료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i) 선수의 금지된 약물 또는 방법 사용이 유효한 TUE에 의한 것이거나 (ii) USADA가 문제의 약물 또는 방법에 대해 추후에 해당 선수에게 TUE를 부여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7.5 선수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UFC 대회에서 은퇴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경기 참가 재개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UFC에 통지(또는 선수의 은퇴일 당시 자격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잔여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내에 통지)하고 통지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UFC 시합이나 체육위원회가 승인 또는 인가한 경기에 출전을 재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기간이 부과되는 시점에 선수가 은퇴한 경우 선수의 제재 조치는 선수가 은퇴에서 복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대기 상태가 된다.

5.7.6 제5.7.1조 및 제5.7.2조의 적용을 받는 선수는 자격 상실, 부상 또는 UFC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대진표에서 취소된 선수의 대체 선수로 대진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 자동으로 1개월 통지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제6조: 시료 분석

시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6.1 인증 및 승인된 시험실의 이용

제2.1조의 목적상 시료는 WADA가 인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승인한 시험실에서만 분석해야 한다. 시료를 분석하게 될 WADA 인증 시험실 또는 WADA가 승인한 시험실의 선택은 전적으로 USADA에 의해 결정된다. 제2.1조 이외의 목적과 관련하여 USADA는 WADA 인증 또는 승인 시험실 이외의 기관에서 시행된 시료 분석에 의존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느 부분도 USADA가 다른 시험실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의 포렌식 분석(예: DNA 검사 또는 지문)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6.2 시료 분석의 목적

시료 분석의 목적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과 규약제4.5조에 기술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WADA가 지시할 수 있는 기타 약물을 검출하거나, USADA가 선수의 소변, 혈액 또는 DNA나 유전자 등 관련 매개 변수를 확인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또는 기타 적법한 도핑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추후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할 수 있다.

6.3 시료 연구

어떠한 시료도 선수의 서면 동의를 받기 전에는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 제6.2조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시료는 특정 선수를 역추적할 수 없도록 식별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4 시료 분석 및 보고 기준

시험실은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6.4.1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험실은 자체 시책 및 비용 부담으로 USADA가 명시하지 않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하여도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한 분석 결과도 보고해야 하며 다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효성과 중요성을 가진다.

6.5 시료 추가 분석

어떠한 시료이든 반도핑 정책 위반 주장의 근거로 A 및 B 시료 분석 결과(또는 반도핑 정책에 따라 B 시료 분석을 철회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 A 시료 결과)가 USADA를 통해 선수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제든지 USADA가 보관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추가 시료 분석은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USADA의 단독 재량에 따라 제6.2조의 목적을 위해 시료를 언제든지 보관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추가 시료 분석은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결과 관리

USADA 또는 그 피지명인은 이러한 정책에 따라 주장되는 모든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해 독립적인 결과 관리 권한을 가진다.

7.1 USADA가 개시한 검사에 대한 결과 관리

USADA 또는 그 피지명인이 개시한 검사에 대한 결과 관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 7.1.1 모든 분석 결과는 시험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보고서 형식으로 암호화되어 USADA에 송부되어야 한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
- 7.1.2 A 시료에 대하여 비정상분석결과를 받는 즉시 USADA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판명해야 한다: (a) 비정상분석결과가 UFC TUE 정책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승인될 예정인 TUE와 일치하는지 여부, 또는 (b)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서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어떤 명백한 이탈이 있었는지 여부.
- 7.1.3 제7.1.2조에 따른 비정상분석결과의 초기 검토에서 UFC TUE 정책에 명시된 대로 해당 TUE 또는 TUE에 대한 자격 여부가 드러나지 않거나 비정상분석결과를 초래한 이탈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또는 최소 결정 허용치 미만이고 이에 따라 USADA에 의해 비정형분석결과로 관리되는 경우, USADA는 즉시 선수 및 UFC에게 동시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체육위원회(해당되는 경우)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서면 통지에는 제14.1.1.1조에 기술된 정보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비정상분석결과, (b) 위반된 반도핑 정책 규정, (c) 신속하게 B 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 또는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B 시료 분석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d) 선수 또는 USADA가 B 시료 분석을 요청한 경우, B 시료 분석을 위한 일시와 장소(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일정을 정해야 함), (e) 선수 및/또는 선수의 대리인이 B 시료 공개 및 분석에 참여할 기회. 단, 그러한 분석을 요청한 경우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가능. 그리고 (f) 부과된 모든 임시자격정지. USADA가 비정상분석결과를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USADA는 이를 선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USADA는 선수에게 약식 A 시료 문서 패키지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시험실에서 완전한 A 시료 문서 패키지를 수령하면 USADA는 선수의 사안이 USADA와 선수 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시험실에 대한 국제 기준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완전한 A 시료 문서 패키지를 선수에게 제공해야 한다.
- 7.1.4 선수 또는 USADA가 요청할 경우,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내에 B 시료 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는 B 시료 분석 요건을 포기하고 A

시료 분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선수가 포기하는 경우에도 USADA는 B 시료 분석을 진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 7.1.5 선수 및/또는 그의 대리인은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또는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내에 시행될 B 시료 분석에 참관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USADA의 대리인도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 7.1.6 B 시료가 음성으로 판정되고 USADA가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전체 검사는 음성인 것으로 간주되며, 선수 및 UFC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7.1.7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즉, B 시료 분석 결과 시료에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제2.1.3.1조에서 고려된 것은 제외) 또는 (반도핑 정책에 따라) B 시료 분석을 요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 선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a) 주장된 반도핑 정책 위반, (b) 그러한 주장의 근거, (c) 제14.1.1.1조에 명시된 추가 정보, (d) USADA가 부과하려는 결과 조치, (e)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 그리고 (f) 선수가 본 조의 (e)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결과 조치는 즉시 부과된다는 점. 선수에게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USADA가 수령하면 USADA는 선수에게 즉시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 완전한 A 및 B 시료 시험실 문서 패키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선수가 B 시료 분석을 포기하는 경우 USADA는 B 시료 문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7.1.8 본 반도핑 정책의 모든 목적상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서면 통지는 USADA 또는 UFC 법무 부서에 제출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가장 최근 우편 주소로 익일배송을 통해 전달되거나 USADA 또는 UFC 법무 부서에 제출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가장 최근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어 전달될 때 발표된다. 실제 통지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7.1.9 보고된 비정상분석결과가 UFC 금지목록에 명시된 최소 결정 허용치보다 낮은 농도이면 해당 시료는 USADA에 의해 비정형분석결과로 검토된다. USADA는 USADA가 선수가 해당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된 것으로 실제로 알았거나, 또는 해당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위험을 부주의하게 무시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비정형분석결과가 반도핑 정책 위반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해당 최소 결정 허용치 미만으로 보고된 남용 약물의 경우, USADA는 선수가 경기력 향상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고의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7.2 비정형분석결과 검토

- 7.2.1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부 상황에서 시험실이 다른 특정 금지약물의 존재를 보고하도록 지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비정형분석결과, 즉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결과일 수 있다.
- 7.2.2 비정형분석결과를 받는 즉시, USADA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판명해야 한다: (a) 해당 TUE를 승인하였거나, 또는 UFC TUE 정책에 따라 승인될 것인지 여부, 또는 (b)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서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한 어떤 명백한 이탈이 있었는지 여부.
- 7.2.3 제7.2.2조에 따른 비정형분석결과 검토에 따라 해당 TUE 또는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 또는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로 인하여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한 것이 드러날 경우, 제2.1조 규정과 관련하여 전체 검사는 음성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 결과가 선수에게 통지된다.

- 7.2.4 검토 결과 해당 TUE 또는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이나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USADA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조사를 완료한 후, 비정형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제7.1.7조에 따라 선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 7.2.5 USADA는 조사를 완료하여 비정형분석결과를 비정상분석결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다음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비정형분석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것이다.
 - 7.2.5.1 USADA가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B 시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선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B 시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통지에는 비정형분석결과에 대한 설명 및 제7.1.3조의 (d) ~ (f)에 기술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 7.2.5.2 UFC 또는 USADA가 시료 채취 시 선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거나, 또는 보류 중인 비정형분석결과가 관련되거나 해당 청문회가 고려되거나 체육위원회에 의해 징계조치가 조사 중인 선수에게 예정된 징계 또는 인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해당 선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체육위원회로부터 체육위원회가 인가한 선수에게 보류 중인 비정형분석결과가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UFC 또는 USADA는 그러한 비정형분석결과가 해당 선수에게 공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체육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USADA는 UFC에 사전 통지를 하고 USADA는 체육위원회가 필요한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UFC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후 USADA가 체육위원회에 관할권에 관한 UF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USADA가 체육위원회에 공개를 진행하려는 경우, 당해 공개 전에, 그리고 USADA와 UFC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경우, USADA와 UFC는 신속한 전화 중재에서 단일 중재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할권에 대한 분쟁을 중재인(본 반도핑 정책 날짜 현재 McLaren Global Sport Solutions Inc.가 중재인임)에게 공동으로 제출한다. USADA와 UFC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회부한 후 48시간 이내에 중재를 완료하고 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자 합당한 노력을 한다(이러한 중재에 대한 비용은 해당 중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
 - 7.2.5.3 검사 결과를 요청했거나, 시료 채취 시 선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거나, 또는 검사 결과가 관련되거나 해당 청문회가 고려되거나 체육위원회에 의해 징계조치가 조사 중인 선수에게 예정된 징계 또는 인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해당 선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체육위원회와 USADA가 최소 결정 허용치 미만의 비정상분석결과의 시험실 보고서는 체육위원회 규정 위반의 증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USADA는 시간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UFC에 사전 통지하여 체육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USADA는 체육위원회가 필요한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UFC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후 USADA가 체육위원회의 관할권에 관한 UF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USADA가 체육위원회에 공개를 진행하려는 경우, 당해 공개 전에, 그리고 USADA와 UFC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경우, USADA와 UFC는 신속한

전화 중재에서 단일 중재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할권에 대한 분쟁을 중재인(본 반도핑 정책 날짜 현재 McLaren Global Sport Solutions Inc.가 중재인임)에게 공동으로 제출한다. USADA와 UFC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회부한 후 48시간 이내에 중재를 완료하고 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자 합당한 노력을 한다(이러한 중재에 대한 비용은 해당 중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 결과는 UFC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공될 수도 있다.

7.3 비정형여권분석결과 및 비정상여권분석결과 검토

USADA는 다른 반도핑기구에 선수 생체여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기구로부터 선수 생체여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정형여권분석결과 및 비정상여권분석결과의 검토는 결과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및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USADA가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시 제7.1.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해당 선수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4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검토

USADA는 잠재적인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UFC의 소재지정보 정책에 정의되어 있음)을 검토해야 한다. USADA가 제2.4조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시 제7.1.7조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여 즉시 해당 선수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5 제7.1조 ~ 제7.4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잠재적인 반도핑 정책 위반 검토

USADA는 제7.1조 ~ 제7.4조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인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후속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USADA가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시 제7.1.7조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여 즉시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7.6 이전 반도핑 정책 위반 확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장되는 반도핑 정책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USADA는 이전 반도핑 정책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7.7 임시자격정지

- 7.7.1 선택적 임시자격정지: USADA는 제7.1조에 기술된 검토와 통지 후, 그리고 제8조에 기술된 최종 청문회 전에 언제든지 반도핑 정책 위반 의혹이 제기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임시자격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7.7.2 제7.1.1조에 따라 임시자격정지가 내려진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a)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 후 적절한 시기에 임시 청문회를 가질 기회, 또는 (b)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제8조에 따라 신속한 최종 청문회를 가질 기회.
 - 7.7.2.1 임시 청문회는 단일 중재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USADA가 명시한 기간 내에 전화 회의를 통해 심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청문회에서 중재인이 결정할 유일한 문제는 임시자격정지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USADA의 결정을 유지할지 여부이다.
 - 7.7.2.2 USADA가 선수에 대하여 반도핑 정책 위반 혐의로 절차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USADA의 임시자격정지 결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성립하기 위해 B 시료 분석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 7.7.2.3 임시자격정지 조치는 선수가 USADA 또는 중재인에게 오염된 제품 사용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해제될 수 있다.
- 7.7.3 A 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임시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추후 B 시료의 분석 결과가 A 시료 분석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추가 임시자격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 7.7.4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으나 임시자격정지가 해당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해당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임시자격정지를 수락할 기회가 있다.

7.8 청문회 절차 없이 결정

- 7.8.1 반도핑 정책 위반 의혹을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언제든지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청문회 절차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USADA가 제안한 결과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
- 7.8.2 또는 반도핑 정책 위반 의혹을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위반을 주장하는 USADA가 발송한 통지문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를 반박하지 않으면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절차를 포기하고 USADA가 제안한 결과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 7.8.3 제7.8.1조 또는 제7.8.2조가 적용되는 경우,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USADA는 즉시 반도핑 정책 위반 혐의와 결과적으로 부과되는 조치를 확정하고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는 서면 결정서를 발부한다. UFC는 제14.3.2조에 따라 해당 결정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7.9 은퇴 또는 UFC 계약 해지

비정상분석결과, 비정형분석결과, 비정형여권분석결과 또는 잠재적인 비분석결과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USADA가 결과 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기간에 선수가 은퇴하거나 UFC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USADA는 그 결과 관리 절차를 완료할 관할권을 보유한다. 선수가 결과 관리 절차 시작 전에 은퇴하거나 UF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선수가 반도핑 정책을 위반한 시점에 해당 선수에 대한 결과 관리 권한을 USADA가 가진 경우, USADA는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결과 관리 절차를 시행할 권한을 보유한다. 선수지원요원 또는 다른 관계자가 반도핑 정책을 위반한 시점에 이들에 대한 결과 관리 권한을 USADA가 가진 경우, USADA는 해당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결과 관리 절차를 시행할 권한을 보유한다.

제8조: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청문회에 대한 권리

8.1 청문회

반도핑 정책 위반 의혹이 제기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UFC 중재 규칙에 규정된 공정하고 독립적인 청문회에서 공정한 청문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UFC 중재 규칙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할 수 없다.

8.2 청문 포기

청문을 받을 권리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통해 포기하거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UFC 정책에 규정된 대로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했다는 USADA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포기할 수 있다(USADA가 모든 해당 통지 규정을 준수한 경우).

제9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제10조: 개인에 대한 제재

10.1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한 시합 결과의 자격박탈

시합 기간 중 또는 시합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반도핑 정책 위반은, UFC의 결정에 따라 타이틀, 랭킹, 상금 또는 포상의 몰수 등 수반되는 모든 결과 조치와 함께 해당 시합에서 획득한 선수의 모든 결과가 자격 박탈된다. 단, 제10.1.1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선수의 결과를 실격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고려할 요인으로는 선수의 반도핑 정책 위반의 심각성, 선수의 과실 정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10.1.1 선수가 위반에 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UFC 및/또는 관련 체육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선수의 결과가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 시합에서 선수의 결과는 실격 처리되지 않는다.

10.2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사용 시도, 또는 소지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6조의 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제10.4조, 제10.5조 또는 제10.6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감경 또는 정지되거나 제10.2.3조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 10.2.1 반도핑 정책 위반이 비특정약물 또는 비특정방법과 관련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2년이다.
- 10.2.2 반도핑 정책 위반이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과 관련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이다.
- 10.2.3 가중처벌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10.3 기타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제10.2조 규정 이외의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제10.6조가 적용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10.3.1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최소 2년, 최대 4년이다.
- 10.3.2 제2.4조의 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2년이며,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로 감경될 수 있다. 마지막 순간에 소재지정보를 변경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다른 행위로 선수가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심각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 본 조에 규정된 2년과 6개월 사이의 유연한 자격정지 기간이 이러한 선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10.3.3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영구 자격정지이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제2.7조 또는 제2.8조 위반은 특히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특정약물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위반을 선수지원요원이 범한 경우 해당 선수지원요원에 대하여 영구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스포츠 이외의 분야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 위반은 관할 행정당국, 근로당국 또는 사법당국에도 신고될 수 있다.
- 10.3.4 제2.9조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이다.

10.3.5 제2.10조의 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2년이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와 사건의 다른 상황에 따라 최소 9개월로 감경될 수 있다.

10.4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위반 없음

10.4.1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안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결과 조치로 시합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UFC 또는 체육위원회의 권리에 따라 본 반도핑 정책 위반이 되지 않는다.

10.4.2 다른 증거 방법의 제한 없이 선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비정상분석결과와 원인이 (i) 오염된 제품 또는 (ii) 인증된 보충제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개별 사안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비정상분석결과에 근거한 반도핑 정책 위반이 되지 않으며, 추후 검사에 따라 금지약물이 선수 시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또는 해당 금지물질(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최소 결정 허용치 미만이 될 때까지), 또는 해당 약물의 존재로 인해 상당한 경기력 향상 이점을 얻지 못할 때까지 해당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0.5 과실 정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

10.5.1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6조의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의 사용에 대한 제재 감경.

반도핑 정책 위반이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과 관련되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은 최소 견책(자격정지 기간 없음)에서 제10.2조에 규정된 자격정지 기간 사이이다.

10.5.2 기타 반도핑 정책 위반

제10.5.1조에 기술되지 않은 반도핑 정책 위반의 경우 제10.6조에 규정된 추가 감경 또는 면제의 적용을 받으며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경될 수 있지만 감경된 자격정지 기간은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의 1/4보다 짧으면 안 된다.

10.6 과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 또는 기타 결과 조치의 면제, 감경 또는 정지

10.6.1 반도핑 정책 위반을 적발하고 입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

10.6.1.1 USADA는 자유재량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USADA 또는 기타 반도핑기구, 형사당국, 프로 스포츠 징계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에 일조한 경우 USADA가 결과 관리 권한을 가진 개별 사건에서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 또는 기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i) USADA 또는 기타 반도핑기구가 다른 사람의 반도핑 정책 위반을 적발하거나 밝혀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당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USADA가 이용할 수 있거나, (ii) 형사당국 또는 징계기구가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 행위나 프로 스포츠 규칙 위반을 적발하거나 밝혀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당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USADA가 이용할 수 있거나, (iii) 본 규약, 국제표준 또는 기술문서 미준수에 대하여 WADA가 가맹기구, WADA 인증 시험실 또는 선수수첩관리단(검사 및 조사를 위한 국제표준에 정의됨)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시작하거나, 또는 (iv) 사법기관 또는 징계기관이 범죄 행위 또는 도핑 이외의 스포츠 무결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 또는 스포츠 규칙 위반을 공표할 수 있다.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 및 부과된 기타 결과 조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범한 반도핑 정책

위반의 심각성과 스포츠에서 도핑 과 본 정책 또는 규약 미준수 및/또는 스포츠 무결성 위반 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공한 실질적인 도움의 중요성에 따라 정지 또는 철회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 기간 또는 기타 결과 조치의 정지 처분이 근거한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하여 제공하지 않고 협조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 USADA는 원래 자격정지 기간 및 기타 결과 조치로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

10.6.2 충분하고도 완전한 협력

10.6.2.1 USADA는 단독 재량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충분하고도 완전한 협력을 제공한 결과 관리 권한이 있는 개별 사안에서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 및 기타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자격정지 기간이 정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범위는 반도핑 정책 위반의 심각성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공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협력의 중요도에 근거해야 한다.

10.6.3 [의도적으로 삭제됨]

10.6.4 남용 약물: 자격정지를 대신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활

10.6.4.1 본 제10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이 남용 약물과 관련이 있고 (ii) 선수가 해당 위반이 경기력을 향상시키지 않았고 시합에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월한 증거로 증명할 수 있으면 상기 (i) 및 (ii)호가 충족되는 경우, 아래에 규정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선수의 참여를 근거로 USADA가 단독 재량에 따라 결정하여 적용 가능한 자격정지 기간이 감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10.6.4.2 USADA가 단독 재량에 따라 결정된 바에 따라 선수가 자비로 인증되고 공인된 독립적인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자격정지 기간이 감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 또는 철회는 항상 선수가 해당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충분하고도 만족스럽게 완료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선수가 전술한 문장에 따라 이러한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으면 선수의 적용 가능한 자격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부과된다(해당 선수가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에 대하여 제10.11.3.1조에 따라 이수 증명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함).

10.6.5 제10.6.1조, 제10.6.2조 또는 제10.6.4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격정지 기간을 철회 또는 감경할지, 아니면 철회 또는 감경하지 않을지에 대한 USADA의 재량에 따른 결정은 청문회에서 검토되거나 항소가 가능하다. 해당 청문회 또는 항소에서 그러한 재량 결정이 프로그램에 대한 선수의 견해로 인해 선수에 대한 보복이었거나 편향되었다는 것을 선수가 증명해야 한다.

10.7 복수 위반

10.7.1 제10.7.3조를 조건으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반도핑 정책을 두 번째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다음 중 짧은 기간이 되어야 한다.

- (a) 첫 번째 위반에 적용 가능한 자격정지 기간과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합한 기간. 각 위반에 대하여 제10.6조에 따른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는
- (b) 두 번째 위반에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 제10.6조에 따른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위에 규정된 자격정지 기간은 제10.6조의 적용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

10.7.2 제10.7.3조를 조건으로 세 번째 반도핑 정책을 위반할 경우 두 번째 위반 시에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의 두 배에서 영구 자격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다.

10.7.3 USADA는 단독 재량에 따라 USADA가 USADA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독 재량으로 선수의 하나 이상의 위반이 의도적이지 않았거나 USADA가 결정할 대로 선수가 제공한 상당한 실질적인 도움 또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협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복수 위반에 대하여 강화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위 선행 문장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제10.7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의 상향된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선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그러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위반(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추가 위반)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10.7.4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가장 최근의 반도핑 정책 위반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 10.7조에 따라 정지 기간이 증가하지 않는다.

10.7.5 잠재적인 특정 복수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10.7.5.1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후 또는 첫 번째 반도핑 정책 위반(및/또는 해당되는 경우 모든 이전 위반)에 대하여 USADA가 서면으로 통지를 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 이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두 번째 위반을 범한 것으로 USADA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반도핑 정책은 두 번째 위반으로만 고려될 것이다. USADA가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위반은 통합하여 첫 번째 단일 위반이 되며 제재는 더 엄한 제재가 수반되는 위반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10.7.5.2 첫 번째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후에 USADA가 첫 번째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반도핑 정책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USADA는 두 개의 위반이 동시에 사실상 판정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제재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시합에서의 결과는 반도핑 정책 위반 시점으로 소급하여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박탈된다.

10.7.5.3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거나 반도핑 정책 위반을 범했다고 판단하는 결정을 본 정책의 효력 발생일 전 또는 후에 체육위원회 또는 다른 반도핑기구가 내린 경우, 해당 결정은 절차가 공정했고 위반이 또한 이러한 정책의 위반에도 해당될 경우 제재를 내릴 때 고려되거나 본 조에 따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위반이 본 정책에 따른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반은 제10.7조 규정과 관련하여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0.7.5.4 본 반도핑 정책의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거나 반도핑 정책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체육위원회 또는 다른 반도핑기구가 내린 결정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해당 위반이 또한 본 정책의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 제재 시 고려되거나 본 조에 따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반이 본 반도핑 정책에 따른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위반은 제10.7 조 규정과 관련하여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0.7.6 10년 동안 복수의 반도핑 정책 위반

제10.7조 규정과 관련하여 복수 위반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각 반도핑 정책 위반이 동일한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해야 한다.

10.8 시료 채취 또는 반도핑 정책 위반 발생 이후 시합 결과의 자격 박탈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시합 결과의 자격 박탈과 더불어,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선수가 획득한 기타 모든 경기 결과는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이틀, 랭킹, 상금 또는 포상의 몰수 등 모든 결과가 UFC에 의해 자격 박탈될 수 있다.

10.9 몰수된 포상의 배분

체육위원회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몰수된 포상은 UFC의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 비용을 상계하거나 반도핑 연구에 제공된다.

10.10 [의도적으로 삭제됨]

10.11 자격정지 기간의 기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최종 청문회 결정일 또는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청문회가 포기되거나 열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수용한 날 또는 자격정지 기간이 부과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10.11.1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지연

청문회 절차에 있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당한 지연, 또는 도핑관리의 기타 측면에서 상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 USADA는 시료 채취일 또는 다른 반도핑 정책 위반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일자까지 앞당겨 자격정지 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 소급 적용되는 자격정지를 비롯한 자격정지 기간 동안 달성한 모든 시합 결과는 UFC에서 실격 처리할 수 있다.

10.11.2 적시 자인

USADA가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상정한 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반도핑 정책 위반을 신속하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수가 다시 시합에 출전하기 전을 의미함) 수용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시료 채취일 또는 다른 반도핑 정책 위반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일자까지 앞당겨 기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가 적용되는 개별 사건에 있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재 부과를 수용한 날, 또는 제재를 부과하는 청문회 결정이 난 날, 또는 제재가 달리 부과된 날로부터 최소한 자격정지 기간의 1/2 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10.11.3 이행한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인정

10.11.3.1 임시자격정지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부과되거나 자발적으로 수용되고 해당 임시자격정지가 준수되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이러한 임시자격정지 기간이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전체 자격정지 기간 내에서 이행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10.11.3.2 당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로 선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시자격정지 또는 체육위원회가 부과한 정지 조치의 효력 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기간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10.12 자격정지 기간 중의 신분

10.12.1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 금지

10.12.1.1 자격정지가 선언된 선수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UFC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그러나 훈련 파트너, 코너, 코치 또는 유사한 경기와 무관한 역할로 활동할 수 있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선수는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계속 검사 대상이 된다.

10.12.1.2 자격정지가 선언된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은 자격정지 기간 동안 UFC 시합과 관련된 어떠한 직책에도 참여할 수 없다.

10.12.2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 금지 위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10.12.1조에 규정된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참가의 결과는 자격 박탈되며, 최악의 경우 본래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과 동일한 새로운 자격정지 기간이 본래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의 말일에 추가된다. 새로운 자격정지 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나 사건의 기타 상황에 대한 USADA의 평가에 근거하여 조정될 수 있다.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 금지 규정을 위반하도록 선수를 도와준 경우, USADA는 이러한 도움에 대해 제2.9조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10.13 제재의 자동 공표

각 제재에 포함된 의무 사항 중 하나를 제14.3조에 따라 자동 공표한다.

제11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제12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제13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제14조: 기밀유지 및 보고

14.1 비정상분석결과, 비정형분석결과 및 기타 반도핑 정책 위반 주장에 관한 정보

14.1.1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반도핑 정책 위반 통지

반도핑 정책 위반 의혹을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통지는 이 반도핑 정책의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송부해야 한다.

14.1.1.1 제2.1조에 따른 반도핑 정책 위반과 관련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반도핑 정책 통지문의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수 성명, 국가, 위반이 특정 시합과 관련되었는지 여부, 경기기간 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 외 검사였는지 여부, 시료 채취일, 시험실이 보고한 분석결과 및 결과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제2.1조 이외의 규정에 따른 반도핑 정책 위반 통지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반한 정책, 위반 주장의 근거 및 위반이 특정 시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제기된 위반 주장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권리. 위반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시합(해당 시)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도 본 반도핑 정책에 따른 결과의 자격 박탈 통지나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14.1.2 반도핑 정책 위반 통지

14.1.2.1 USADA는 반도핑 정책 위반 주장을 UFC에 알리고 동시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한다. USADA는 또한 USADA가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비정상분석결과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UFC에 통지한다(해당 비정상분석결과와 관련하여 USADA의 조사 안료를 보류).

14.1.2.2 체육위원회가 결과를 요청했고 해당 체육위원회가 시료 채취 시 선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거나, 또는 검사 결과가 관련되거나 해당 청문회가 고려되거나 체육위원회에 의해 징계조치가 조사 중인 선수에게 예정된 징계 또는 인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해당 선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USADA는 반도핑 정책 위반 주장을 체육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결과는 UFC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공될 수도 있다. USADA는 UFC에 사전 통지를 하고 USADA는 체육위원회가 필요한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UFC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후 USADA가 체육위원회의 관할권에 관한 UF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USADA가 체육위원회에 공개를 진행하려는 경우, 당해 공개 전에, 그리고 USADA와 UFC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경우, USADA와 UFC는 신속한 전화 중재에서 단일 중재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할권에 대한 분쟁을 중재인(본 반도핑 정책 날짜 현재 McLaren Global Sport Solutions Inc.가 중재인임)에게 공동으로 제출한다. USADA와 UFC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회부한 후 48시간 이내에 중재를 완료하고 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자 합당한 노력을 한다(이러한 중재에 대한 비용은 해당 중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 USADA는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체육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1.2.3 USADA 또는 USADA가 이용하는 시험실이 WADA에 공개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개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는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한)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가 공개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신원을 판단하는 데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14.1.3 상황 보고

USADA가 제14.1.2조에 따라 반도핑 정책 위반을 통지하면 UFC는 통지를 받은 체육위원회 또는 반도핑기구에 해당 사안의 결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14.2 [의도적으로 삭제됨]

14.3 대중 공개

14.3.1 USADA에 의해 반도핑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신원은 제7.1.3조, 제7.2.4조,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가 제공된 후에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적 근거와 함께 UFC에 의해(그러나 UFC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USADA에 의하지 않고)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14.3.2 제8조에 따라 청문회에서 결정이 내려지거나 청문을 받을 권리가 포기되거나, 또는

반도핑 정책 위반 주장에 대해 적정 기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UFC는 위반한 반도핑 정책, 위반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성명, 관련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해당 시), 부과된 결과 조치 등 해당 사건의 처분 내용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14.3.3 결정 발표는 최소한 UFC의 반도핑 웹 사이트(www.UFC.USADA.org)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1개월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정보를 게재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공개한다.
- 14.3.4 체육위원회가 검사 결과를 요청했거나, 시료 채취 시 선수에 대한 관찰권을 가지거나, 또는 검사 결과가 관련된 선수에게 예정되거나 고려되는 징계 또는 인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해당 선수에 대한 관찰권을 가지는 경우, 또는 결과가 관련될 수 있는 조사를 해당 체육위원회가 수행하도록 USADA에게 권고되는 경우, USADA는 체육위원회에 통지를 할 수 있다. USADA는 UFC에 사전 통지를 하고 USADA는 해당 체육위원회가 필요한 관찰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UFC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후 USADA가 체육위원회의 관찰권에 관한 UF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USADA가 체육위원회에 공개를 진행하려는 경우, 당해 공개 전에, 그리고 USADA와 UFC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경우, USADA와 UFC는 신속한 전화 중재에서 단일 중재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찰권에 대한 분쟁을 중재인(본 반도핑 정책 날짜 현재 McLaren Global Sport Solutions Inc.가 중재인임)에게 공동으로 제출한다. USADA와 UFC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회부한 후 48시간 이내에 중재를 완료하고 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자 합당한 노력을 한다(이러한 중재에 대한 비용은 해당 중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 결과는 UFC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7.2.5.2조, 제7.2.5.3조 및 제14.1.2.2조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
- 14.3.5 청문회 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반도핑 정책 위반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은, 해당 반도핑 정책 위반이 이전에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으면, 그 결정에 기속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UFC에 의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 14.3.6 USADA 또는 세계반도핑기구 인증 검사실, 또는 그 임원은 미결 사건과 관련한 특정 사실에 대해 절차 및 과학적 설명에 반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 14.3.7 제14.3.2조에서 요구하는 의무적 대중 보고는 반도핑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선택적 대중 보고는 해당 사건에 수반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14.3.8 제14.3.4조, 제14.3.5조 또는 제14.3.6조에도 불구하고 UFC 또는 USADA는 (i)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취해진 모든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개 의견에 비례적으로 대응하거나, (ii) 각 사안에서 해당 기관이나 당국이 선수에 대하여 필요한 관찰권이 있는 경우 증언 또는 기타 정보를 체육위원회나 정부 규제 당국, 입법 또는 행정 당국이나 사법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체육위원회와 관련하여 USADA는 UFC에 사전 통지를 하고 USADA는 해당 체육위원회가 필요한 관찰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UFC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후 USADA가 체육위원회의 관찰권에 관한 UF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USADA가 체육위원회에 공개를 진행하려는 경우, 당해 공개 전에, 그리고 USADA와 UFC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경우, USADA와 UFC는 신속한 전화 중재에서 단일 중재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찰권에 대한 분쟁을 중재인(본 반도핑 정책 날짜 현재 McLaren Global Sport Solutions Inc.가 중재인임)에게 공동으로 제출한다. USADA와 UFC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회부한 후 48시간 이내에 중재를 완료하고 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자 합당한 노력을 한다(이러한 중재에 대한 비용은 해당 중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

14.4 통계 보고

UFC는 도핑관리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UFC는 또한 검사받은 선수의 이름과 각 검사 날짜가 포함된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14.5 개인정보 보호

- 14.5.1 UFC와 USADA는 국제표준(구체적으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표준 포함) 및 반도핑 정책에 따른 도핑방지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하고 타당할 경우, 선수 및 기타 관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14.5.2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정보를 UFC, USADA 또는 특정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선수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표준에 따라 반도핑 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본 반도핑 정책에 의해 허용되거나 인가되는 경우 UFC, USADA 또는 특정인이 관련 데이터 보호법 등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 처리, 공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14.5.3 TUE, 시료 채취나 분석 또는 반도핑 조사 신청의 결과로 제출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의료정보 또는 건강관리 정보로 간주되지 않는다.

14.6 조사 관련 정보 공유

UFC 또는 USADA는 각 사안에서 해당 기관이나 당국이 선수에 대하여 필요한 관찰권이 있는 경우 UFC, USADA, 체육위원회 또는 반도핑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와 관련하여 체육위원회, 규약 가맹 반도핑기구 또는 사법당국과 기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다양한 기관이나 당국 간의 관찰권 범위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필요는 없다. 체육위원회와 관련하여 USADA는 UFC에 사전 통지를 하고 USADA는 해당 체육위원회가 필요한 관찰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UFC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후 USADA가 체육위원회의 관찰권에 관한 UF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USADA가 체육위원회에 공개를 진행하려는 경우, 당해 공개 전에, 그리고 USADA와 UFC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경우, USADA와 UFC는 신속한 전화 중재에서 단일 중재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찰권에 대한 분쟁을 중재인(본 반도핑 정책 날짜 현재 McLaren Global Sport Solutions Inc.가 중재인임)에게 공동으로 제출한다. USADA와 UFC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회부한 후 48시간 이내에 중재를 완료하고 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자 합당한 노력을 한다(이러한 중재에 대한 비용은 해당 중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

제15조: 결정의 적용 및 인정

- 15.1 검사, 청문회 결과 및 본 반도핑 정책에 부합하고 해당 당사자의 권한 내에 있는 체육위원회 또는 기타 반도핑기구의 최종 판결을 UFC는 인정하고 존중한다.
- 15.2 UFC와 본 반도핑 정책의 적용을 받는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는 이 반도핑 정책과 관련된 UFC 또는 USADA의 모든 결정을 모든 체육위원회, 체육위원회로부터 경기에 대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기타 프로모터, 그리고 UFC 또는 USADA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타 반도핑기구가 인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16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제17조: 소멸시효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제7조에 명시된 반도핑 정책 위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일자로부터 10년 이내에 통지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반도핑 정책 위반 처리 절차에 착수할 수 없다.

제18조: 교육

UFC와 USADA는 도핑이 없는 스포츠를 위한 정보,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가, 감시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9조: [의도적으로 삭제됨]

제20조: 반도핑 정책의 개정 및 해석

- 20.1 본 반도핑 정책과 UFC 금지규칙은 UFC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개정안은 UFC의 반도핑 웹 사이트(www.UFC.USADA.org)에 게재된 후 30일 후에 발효된다.
- 20.2 본 반도핑 정책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문서로 해석되고 기존의 법률이나 법령을 참조하여 해석되지 않는다.
- 20.3 본 반도핑 정책의 다양한 파트와 조항에 사용된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 반도핑 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참조하는 조항의 언어적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4 규약, 규약의 여러 조항에 부가된 주해 및 국제/표준은 상충되지 않는 경우 이 반도핑 정책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 단,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반도핑 정책이 우선한다.
- 20.5 프로그램은 2015년 7월 1일(이하 "프로그램 시작일")에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였다. "본 정책의 범위 및 적용"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반도핑 정책은 프로그램 시작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단, 프로그램 시작일 이전에 체육위원회 또는 기타 반도핑기구에 의해 입증된 제2.5.2조 및 반도핑 정책 위반에 따라 공개된 행위는 프로그램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에 대하여 제10조에 의거한 제재를 결정할 때 "첫 번째 위반" 또는 "두 번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20.6 본 반도핑 정책의 공식 원본은 영어본이다. 영어본과 다른 번역본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제21조: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

21.1 선수의 역할과 책임

- 21.1.1 본 반도핑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21.1.2 항상 시료 채취에 순응한다.
- 21.1.3 반도핑의 측면에서 자신이 섭취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1.1.4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무요원에게 알리고, 어떠한 의료 처치도 본 반도핑 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21.1.5 지난 10년 이내에 선수의 도핑 위반 사실을 밝혀낸 체육위원회 또는 비가맹기구의 결정을 UFC와 USADA에 공개한다.

- 21.1.6 UFC와 USADA의 반도핑 정책 위반 관련 조사에 협조한다.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UFC 또는 USADA 조사에 선수가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UFC의 격투기선수 행동수칙(Fighter Conduct Policy)이나 기타 징계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 21.1.7 제품이 오염된 제품인지 또는 인증된 보충제인지 판단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제품을 조사한다.

21.2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 21.2.1 본 반도핑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21.2.2 선수 검사 프로그램에 협조한다.
- 21.2.3 반도핑에 대한 자세를 강화하기 위해 선수의 가치관과 습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21.2.4 지난 10년 이내에 해당 요원의 도핑 위반 사실을 밝혀낸 체육위원회 또는 비가맹기구의 결정을 UFC와 USADA에 공개한다.
- 21.2.5 UFC와 USADA의 반도핑 정책 위반 관련 조사에 협조한다.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UFC 또는 USADA 조사에 선수지원요원이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UFC의 격투기선수 행동수칙(Fighter Conduct Policy)이나 기타 징계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 21.2.6 선수지원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선수지원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UFC 징계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제22조: 면책 조항

시합에 참가 또는 준비하거나 시합에 참가 또는 준비하는 선수와 일하는 조건으로, 선의로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또는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청구, 요구 또는 소송 원인으로부터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는 UFC, USADA 및 그 피지명인을 면책하고 손해가 없도록 할 것에 동의한다.

제23조: 경과규정

23.1 2021년도 반도핑 정책의 전면 적용

2021년도 반도핑 정책은 2021년 1월 1일("효력 발생일") 자로 발효된다.

23.2 소급적용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 금지

효력 발생일 당시 계류 중인 반도핑 정책 위반 사건 및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반도핑 정책 위반에 근거한 효력 발생일 이후 제기된 반도핑 정책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규칙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더 이익이 되고 사건을 담당할 청문위원회가 사건의 정황상 이러한 규칙이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사건은 제기된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할 당시에 유효한 반도핑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23.3 2021년도 반도핑 정책 효력 발생일 이전에 내려진 판정에 대한 적용

2021년도 반도핑 정책은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경우 반도핑 정책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3.4 추가적 반도핑 정책 개정안

기타 추가적 반도핑 정책 개정안은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부록 1 용어의 정의

투여: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제공, 공급, 관리, 촉진, 또는 달리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데 관계자가 참여하는 일. 단, 이 정의에는 양심적인 의료진이 합법적인 치료상의 목적에 따라 또는 다른 용인 가능한 타당한 사유에 따라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수반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정상상 금지약물이 진정한 합법적인 치료상의 목적을 의도한 것이 아니거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의도였던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은 금지약물을 수반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상분석결과: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에 따라, 시료에서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의 존재를 확인하거나(내인성 약물의 수치 상승 포함), 금지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WADA 인증 시험실 또는 기타 WADA 승인 시험실의 보고서.

비정상분석결과 관리 최소 결정 허용치("최소 결정 허용치"): UFC 금지목록에 규정되어 있듯이 비정상분석결과 관리 최소 결정 허용치는 금지약물의 검출량으로, 이 수치 미만일 경우 보고된 비정상분석결과가 USADA에 의해 비정형분석결과로 관리된다.

비정상여권분석결과: 관련 국제표준에 기술한 바에 따라 비정상여권분석결과로 확인된 보고.

가중처벌요건: 가중처벌요건은 반도핑 정책 위반이 의도적이었고 반도핑 정책 위반이 선수의 시합 성과를 향상시키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고 다음과 같은 추가 요인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 계획 또는 작전의 일환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반도핑 정책 위반 음모 또는 공동 계획에 연루되어 반도핑 정책 위반을 범하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여러 가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소지했거나 여러 번에 걸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소지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반도핑 정책 위반의 적발 또는 판결을 피하기 위해 기만적 행위나 방해 행위에 관여한 경우.

반도핑기구: 반도핑 프로그램 시행을 담당하는 UFC, USADA, WADA, 규약 가맹기구 또는 기타 기구.

선수: UFC 시합에서 격투기선수로 참가하기 위해 UFC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격투기선수. 제 2.8조에 따른 투여 또는 투여 시도와 관련하여 "선수"라는 용어는 아마추어 또는 프로 종합격투기에 출전하는 UFC 계약 격투기선수와 UFC 비회원 격투기선수를 모두 지칭한다.

선수생체여권: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 및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에 기술된 바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렬하는 프로그램 및 방법.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 중단: 아래의 활동 중단(선수의 귀책사유) 참조.

선수지원요원: 전문적 또는 스포츠 관련 역량을 가지고 선수와 직접 협력하거나 선수를 치료 또는 지원하는 모든 관계자.

체육위원회: 종합격투기 경기 또는 그러한 경기의 출전자를 규제, 승인, 제재 또는 인가하는 권한을 가진 주 또는 기타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인정한 규제기관.

시도: 고의로 반도핑 정책 위반을 범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과정상 실질적인 단계를 구성하는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해당 시도에 연루되지 않은 제3자에게 발각되기 전에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 위반을 범하려는 시도만으로 반도핑 정책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비정형분석결과: 비정상분석결과로 판명하기 전에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WADA 인증 시험실 또는 기타 WADA 승인 시험실의 보고서.

비정형여권분석결과: 관련 국제표준에 기술한 바에 따라 비정형여권분석결과로 기술된 보고.

시합: UFC에서 주최하거나 달리 운영하는 종합격투기 경기 또는 비공식 시합.

인증된 보충제: UFC 금지목록 참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우월한 증거보다 크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보다는 작은 증거의 기준.

규약: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을 일컫는다.

반도핑 정책 위반 결과 조치("Consequences"):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하나 이상 초래될 수 있다. (a) 자격 박탈은 모든 타이틀, 랭킹, 상금 또는 기타 수당의 몰수 등 모든 결과 조치와 더불어 특정 시합에서 선수가 받은 결과가 무효가 됨을 의미한다. (b) 자격정지는 제10.12.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반도핑 정책 위반 때문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지정된 기간 동안 시합에서 경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참가하는 것이 금지됨을 의미한다. (c) 임시자격정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청문회의 최종 결정에 앞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10.12.1조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모든 시합에서 경기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d) 재정적 결과 조치는 반도핑 정책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정적 제재 조치를 의미한다. (e) 대중 공개 또는 대중 보고란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유포 또는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오염된 제품: 다음 제품(보충제 이외 제품) 중 하나: (i) 물, 음식물(원산지 국가 또는 제품 섭취 국가의 법률 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외부로 반출될 수 있는 음식물 포함) 또는 처방의약품과 같이 환경 오염 또는 기타 알아채지 못하는 오염으로 인해 금지약물이 포함된 제품, 또는 (ii) 제품 라벨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사람이 제품에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상당한 위험이 있으리라 의심하지 못하는 제품.

최소 결정 허용치: 비정상분석결과 관리 최소 결정 허용치 참조.

자격 박탈: 상기 반도핑 정책 위반 결과 조치 참조.

도핑관리: 소재지정보 제공, 시료 채취 및 처리, 시험실 분석, 치료 목적 사용 면제(TUE), 조사, 결과 관리 및 청문회의 모든 단계와 절차 등 검사 배분 계획 수립에서부터 모든 청문회의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와 절차.

과실: 과실은 특정 상황에 대한 직무 태만 또는 적절한 주의 부족을 말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경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장애 등의 특수한 고려사항, 선수가 인지했어야 하는 위험성의 정도, 인지했어야 하는 위험성의 수준과 관련하여 선수가 실제로 주의를 기울인 수준 및 조사한 정도 등이 포함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요구되는 행동 표준에서 벗어났음을 설명할 때에는 각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해당 위반이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없었고 경기력을 향상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그 요인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대진표: UFC가 주최하는 종합격투기 이벤트 중에 벌어질 예정인 시합 프로그램.

재정적 결과 조치: 상기 반도핑 정책 위반 결과 조치 참조.

충분하고도 완전한 협력: 선수가 USADA의 재량으로 결정한 바에 따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반도핑 정책 위반을 범할 의도가 없었고 해당 사안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모든 합리적인 질의와 요청에 충분하고도 진실된 답변과 정보(각 사안에서 모든 실질적인 측면에서)를 신속히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시료 채취에 관한 사전 또는 사후 통지에 관계없이 반도핑 정책 위반의 감경 요소 승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충분하고도 완전한 협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선수가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충분하고도 완전한 협력은 제재 시 가중처벌요건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경기기간 중: 본 반도핑 정책과 관련하여 “경기기간 중”이란 시합이 열리는 대진표 예정 시작 전날 낮 12 시에 시작하여 시합 후 시료 또는 검체 채취 절차가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USADA가 합리적인 시간 이내(선수가 시합 후 의료 승인을 받은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 시합 후 시료 또는 검체 채취를 개시하지 않으면 경기기간 중 기간은 그 시점에 만료된다.

활동 중단(선수의 귀책사유): 선수는 프로모션 계약에 규정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가 은퇴하거나 UFC 경기 참가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UFC 및 USADA에 통지하면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 중단으로 간주되어 활동이 중단되고 이후부터 소재지정보를 제공하고 USADA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활동 중단(UFC의 귀책사유): 선수는 UFC에 의한 프로모션 계약의 해지 또는 UFC의 갱신 거부(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모션 계약 만료 시 선수와의 계약 관계가 계속된다)로 인해 UFC와 계약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UFC의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 중단으로 간주되어 활동이 중단된다.

자격정지: 상기 반도핑 정책 위반 결과 조치 참조.

국제표준: 규약을 지원하기 위해 WADA가 채택한 표준. 국제표준(다른 대안적 표준, 관행 또는 절차에 대립되는)의 준수는 국제표준에 명시된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 해당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모든 기술문서를 포함한다.

표지자: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을 나타내는 화합물, 화합물 집단 또는 생물학적 지표를 말한다.

대사물질: 생물학적 변환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을 말한다.

미성년자: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한다.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자신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복용했거나 반도핑 정책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거나 의심하지 못했으며,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선수 본인이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어떻게 유입했는지도 입증해야 한다.

경기기간 외: 경기기간 중이 아닌 기간.

참가자: 모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을 말한다.

관계자: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주체 등을 포함한 자연인을 말한다.

소지: 실질적, 물리적 소지 또는 추정적 소지(관계자가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의 근거가 된다)를 말한다. 단, 관계자가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관계자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의도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적 소지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관계자가, 반도핑 정책 위반을 범했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당해 관계자가 소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러한 사실을 반도핑기구에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소지를 포기한 경우에는 단지 소지에만 근거한 반도핑 정책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용어의 정의에 반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구매(전자적인 방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구매 포함)는 구매한 사람의 소지에 해당된다.

전문적 또는 스포츠 관련 역량: 전문적 또는 스포츠 관련 역량을 가진 인력에는 매니저, 코치, 트레이너, 세컨드(작전을 지시하는 코너맨), 코너맨, 에이전트, 임원, 의료 또는 준 의료 인력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반도핑 정책의 목적상, 선수 훈련에 간접적 또는 주변적으로 관여하거나 선수 파트너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본 반도핑 정책에 기술된 UFC 반도핑 프로그램.

금지방법: UFC 금지목록에 규정된 모든 방법을 말한다.

금지약물: UFC 금지목록에 규정된 모든 약물과 약물 종류를 말한다.

프로모션 계약: UFC와 선수 간 프로모션 및 부수적 권리에 대한 약정이나 유사한 계약상의 관계.

임시청문회: 제7.7조와 관련하여 선수에게 통지와 서면 또는 구두로 청문할 기회가 제공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문회에 앞서 개최되는 신속한 약식청문회를 말한다.

임시자격정지: 상기 반도핑 정책 위반 결과 조치 참조.

대중 공개 또는 대중 보고: 상기 반도핑 정책 위반 결과 조치 참조.

결과 관리: 청문회 절차 종료를 포함하여 사안의 최종 해결 때까지 결과 관리를 위한 국제표준의 제5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전 통지 단계와 같이 제6조에 따른 통지 또는 특정 상황(예: 비정형분석결과, 선수생체어권,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사이의 기간을 포괄하는 프로세스.

시료 또는 검체: 도핑관리 목적으로 채취된 생물학적 물질을 말한다.

가맹기구: 규약에 서명하고 규약 준수에 동의한 스포츠 기구들을 말한다.

특정약물: 제4.2.2조 참조.

남용 약물: UFC 금지목록에서 남용 약물로 식별된 금지약물.

실질적인 도움: 제10.6.1조의 목적상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자는 (1) 반도핑 정책 위반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소지한 모든 정보를 서명한 서면진술서에 완전하게 밝혀야 하고, (2) 예를 들어, USADA 또는 청문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해당 정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정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제기된 사건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거나 제기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제2.5조 및 제2.5.1조 참조.

표적검사: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특정 선수를 검사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검사 배분 계획, 시료 채취, 시료 관리 및 시험실로의 시료 운반 등 도핑관리과정의 부분을 말한다.

부정거래: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또는 반도핑기구의 관할권에 귀속되는 기타 관계자가 제3자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판매, 증여, 운반, 발송, 전달 또는 분배(또는 기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소지)하는 행위(직접 또는 전자적인 방법이나 기타 방법으로)를 말한다. 단, 이 정의에는 “양심적인” 의료진이 합법적인 치료상의 목적에 따라 또는 다른 용인 가능한 타당한 사유에 따라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수반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정황상 금지약물이 진정한 합법적인 치료상의 목적을 의도한 것이 아니거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의도였던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은 금지약물을 수반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TUE: 제4.4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치료 목적 사용 면제를 말한다.

UFC: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과 본 반도핑 정책에 따라 UFC가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기관. 미국반도핑기구(USADA)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UFC의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 중단: 상기 활동 중단(UFC의 귀책사유) 참조.



UFC 도핑 방지 프로그램

(719) 785-2000

Toll-Free (866) 601-2632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

UFCathleteexpress@USADA.org

www.UFC.usada.org